

## □ 대학도서관진흥법안

### 대학도서관진흥법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285
----------	---------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의자: 김세연·윤관석·서용교·유승우·박성호·  
이낙연·김우남·민병주·문대성·강은희·  
최봉홍·하태경·이철우·정진후·서상기  
의원(15명)

#### 제안이유

도서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현행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학교도서관의 경우 2007년 12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대학도서관은 관련법이 미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은 전문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축적·관리하여 학문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되는 바, 대학도서관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대학도서관의 업무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함(안 제7조제1항).
- 다. 대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대학도서관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고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연구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협력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대학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① 대학은 대학도서관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위원회가 수립·심의·조정한 주요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설치·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지원서비스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학습지원서비스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그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개방, 도서관자료의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은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서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사서 등) ① 대학의 장은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서 등 대학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등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도서관자료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연구경쟁력 향상,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지식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등의 평가에 관한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협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 대학도서관진흥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제3조,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

###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은 대학경쟁력과 직결됨에도 그 투자효과가 장기적이고 잠복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점으로 인해 재정지원 측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왔음. 이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이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권고하는 성격의 재정수반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향후 정책방향과 대학 평가요소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서 많은 가정을 두어 그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김세연 의원실 조진욱 비서관
연락처	02-788- 2839